

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3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7. 3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7. 3

(제9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(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임 양 환

나. 개정사유

- 「농촌생활개선사업」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였으나,
- 도내에서 우리군만 유일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, 기타 모든 시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으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토록 조치

다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과 분장 사무의 변경 (안 제3조)
 -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→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 정 일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「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반영과제」로 건의된 내용으로,
- 도내에서 우리군만 생활개선사업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학습단체의 각종 교육 및 행사시 연대성이 결여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과 장이 이용등에 어려움이 많아 동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관장토록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키 위한 것임.

- 행정기구의 설치는 행정의 통일성과 업무추진상의 효율성, 생산성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주민의 이용도와 편리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,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,
- 동 조례의 개정안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분장사무에서 「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」을 삭제하였는바,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동 업무를 추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,
-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<질의요지>

- 생활개선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?
-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여건과 형편에 따라 업무분장이 가능할 것 아닌가?

<답변요지>

- 생활개선회 업무나 농촌 진흥청 업무이며 도내에서도 전 시군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어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.

5. 토론요지

-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하자는 안과 두 번이나 계류하여 심사하였기 때문에 처리하자는 안이 있어 표결처리키로 함.

6. 심사결과

“표결 결과 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